

인가번호 제 호

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 립 인 가 증

1. 연합회명:
2. 회장 성명:
3. 주 소:
4. 설립유형: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15조의8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(법인) /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15조의8제2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(비영리법인)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기획예산처장관 직인